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
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전문위원 노형우

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
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김 기 창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1년 4월 13일

나. 회부일자 : 2021년 4월 16일

3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충청북도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, 협의회 구성 사항 중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제명 중 “지역” 명칭을 삭제(안 제1조 포함)

나. 협의회 설치 근거 및 협의회 기능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규정
(안 제2조, 안 제3조)

다. 협의회 구성의 미비한 부분 보완(안 제4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상위법령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라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근거 명시와 협의회 구성 중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 제2조에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명시하고, 제4조에 협의회 구성 사항 중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-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- 제명 “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” 를 “충청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” 로 제명에서 “지역” 명칭을 삭제함.
 - 제1조 중 “지역 전담기구” 를 “전담기구” 로,
 - 제2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, 제2조를 신설(협의회의 설치).
 - 제3조(종전의 제2조) 각 호 외의 부분을 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” 로, 제3호를 “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” 으로 하고 제4호를 신설함.
 - 제4조(종전의 제3조)제2항 중 “충청북도” 를 “충청북도(이하 “도” 라 한다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원은 충청북도” 를 “당연직위원은 도” 로,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 을 “재난관리책임기관(도교육청 및 각 시·군, 지방공기업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제4항을 신설하며,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업무 담당사무관” 을 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” 으로 하고 제7항을 신설함.
 - 제6조(종전의 제5조)제2항 중 “충청북도” 를 “도” 로 조문을 정비함.
- 관련부서에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“특이사항 없음” 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협의회 설치 근거 명시 및 구성 사항 중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